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22일

O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 등 변동사 항을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□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정비: 17건 (과 신설 2건, 명칭변경 2건, 업무이관 13건)
 - 과 신설 : 2건(안 별표 1)
 - 산단관리과, 인사혁신과
 - 과 명칭변경 : 2건(안 별표 1)
 - 유기농산과 → 스마트농산과
 - 교통정책과 → 교통철도과

- O 업무이관: 13건
 - 총무과 → 인사혁신과
 - ·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외 6건(안 별표 4)
 - ·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 외 1건(안 별표 5)
 - 투자유치과 → 산단관리과
 - ·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외 3건(안 별표 1)
- □ 자체 사무 정비: 16건 (신설 7건, 삭제 4건, 사무명 변경 5건)
 - O 법 개정 및 업무일원화를 위한 시·군 위임사무 신설: 7건(안 별표 1)
 -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(교통철도과)
 - ·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(사목의 사무에 한한다)
 - · 청문(사목의 사무에 한한다)
 - ·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법 제72조 제1항·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·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)
 -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(교통철도과)
 - · 등록의 표식 등
 - · 검사 등
 - · 과징금의 부과·징수
 - · 과태료의 부과·징수
 - 법 개정 및 위임 권한이 없는 위임시무 삭제 : 4건(안 별표 1)
 -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(식의약안전과)
 - ·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
 - · 마약의 소매보고
 -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(교통철도과)

- ·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, 개선명령 지정취소, 사업정지 명령 →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, 지정취소, 사업정지 명령
-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(교통철도과)
 - ·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
- 법 조문에 맞게 사무명 변경 : 5건(안 별표 1)
 -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(교통철도과)
 - ·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,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→ 자동차등 록원부의 비치, 관리 및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
 - · 자동차신규등록, 등록증교부,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→ 자동차 신규등록, 등록증발급,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
 - · 자동차변경·이전,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 명서 교부 → 자동차변경·이전,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 와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
 - ·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, 개선명령 지정 취소, 사업정지 명령 →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, 개선명령 지정 취소, 사업정지 명령
 - ·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,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→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, 번호판 발급과 반납처리

5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 첫째,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2건, 과 명칭변경 2건, 업무이관 13건 등 사무 정비 17건,

둘째, 법 개정 및 업무일원화를 위한 시·군 위임사무 신설 7건, 법 개정 및 위임 권한이 없는 위임사무 삭제 4건, 법 조문에 맞게 사무명 변경 5건 등 16건의 자체 사무 정비를 하는 것임.

이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